

대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(안)



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(안)

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(안)을 보고드림

IIII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

- O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38조(도시·군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감독 및 조정)
- ○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」 1-3-2.* (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452)
 - *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지자체는 조례 또는 지침으로 운영 하여야 하며,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■ 추진경위

- O 2017년 도시계획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: 2018. 10. 26.
-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·관리 실태조사 : 2018. 2. 21.~3.5.
- O 2018년 상반기 도시계획 연찬회 개최 : 2018. 3. 30.
-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관계자 간담회 개최 : 2018. 5. 14.
- O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시·군 간담회 개최 : 2018. 6. 5.
- O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운영방안 의견수렴 : 2018. 6. 7.~6. 15.
-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착안(안) 자문 : 2018. 7. 26.

🔟 앞으로의 계획

O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도 및 시·군 도시·군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"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(안)"을 활용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: 2018. 7월이후

붙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(안) 1부.

붙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(안)

Ⅰ 총 괄

□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

- 개발행위허가
 - 발전(전기)사업허가 시 지반 안정성 검토와 구조계산이 반영된 서류 확인
 - ▶ 동일 목적의 허가 건으로 사업계획이 동일한지 확인 필요
 - 준공 시 발전사업허가 부서 협의하여 준공확인(준공검사 조서 등)
- O 도시·군계획위원회 심의
 - 지역실정에 맞는 심의조건 부여
 - ▶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(안)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 운영 ex) 과도한 지중화 요구, 식생 불가한 염전지역 등에 차폐 식재 등

□ 기술적 검토 사항

- O 태양광 지주기초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의 검토를 받아 지역별 풍속을 반영하여 기초 검토
- O 배수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공 공법(우수받이, 맹암거, 플륨관 등) 검토
- O 저류지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계획 제시 및 검토
- O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우회되지 않도록 진입도로 조성
- O 이격거리 기준 등을 도시·군계획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운영 ('18. 6. 30. 시행,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2)
 - 다만, 이격거리, 높이,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세부 심의 권고(안)

구분	검 토 항 목
입지의 적정성	 ○ 조수류, 수목 등 집단서식지,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○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,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
기반 시설 계획	 ○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, 내부동선 적정성 - 긴급차량 통행(안전사고)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개설을 검토 ○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·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○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- 토사유출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
주변 지역 환경 및 경보 보호	 ○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필요시 부지 경계부에 차폐 효과가 있도록 완충공간 확보 및 교차식재 검토 모듈하부 및 모듈 사이 비탈면에 녹화 계획 수립 ○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・형태・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○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・생태계파괴・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 ○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, 완충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

유역면적 산정, 검토 설 설치 및 규
검토
서 서키 미 그
큰 '큰'이 롯 비
시 배수 원활
획 적정성
등에 대비 사면
등 검토
h전 사고 발생
조안정성 검토
토
조치 검토
획의 적절성

구분	검 토 항 목
중점 심의 사항	O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
	-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
	O 환경·경관·안전의 적정성
	O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
	- 구조・안전(최대풍속, 지반조사)등 연약지반 재해 및 기초 구조 등 검토
	-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시설 및 송배전시설 계획을 포함할 것
	-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지역특성, 주민여론,
	지역기여) 등

※ 참고 :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 별표1 및 도시계획위원회 추가 권고사항(적색)임